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. 2. 15 선고 2015가단11191 판결 [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청구]

전 문

원 고 화동화물자동차 주식회사

피 고 A

변론 종결 무변론

판결 선고 2016. 2. 15.

주 문

1. 피고는,

가.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. 1. 4.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
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,

나. 원고에게 2,775,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1. 5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
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(무변론 판결)

판사 진화원

자동차의 표시

자동차등록번호	B
차 명	리베로슈퍼캡내장탑차(LIBERO)
차 종	화물 중형
차 대 번 호	C
제 원 관 리 번 호	A08-1-00034-0271-3205
용 도	영업용
원 동 기 형 식	D4CB
모 델 연 도	2006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2006. 1. 1.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(이하 '이 사건 자동차'라고 한다)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되, 피고가 원고에게 지입관리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, 피고가 지입관리료 등 지급 의무를 3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행 최고 없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습니다.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습니다.
2.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. 11. 17. 기준 지입관리료, 보험료 등 합계 2,775,310원의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였고, 피고의 3개월 이상 지입관리료 등 지급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위 위수탁관리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2016. 1. 4.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.
3.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인 2016. 1. 4.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, 원고에게 위 지입관리료 등 2,775,31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. 1. 5.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- 이 상 -